

2020년도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사업 공고

해외취업에 성공한 우리 청년들의 취업초기 현지 적응 및 일정 기간 경력개발을 통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사업 개요

1. 지원내용

- 지원인원 : 4,400명(선진국 3,000명/ 지원금 우대국가 1,400명)
※ 지원인원 달성 시에는 조기 마감될 수 있음(국가 및 신청 차수별 마감)
- 지원금액

구 분	지원금액	지원방식
지원금 우대국가	800만원	(1차) 취업후 1개월 : 300만원 지급 (2차) 취업후 6개월 : 200만원 지급 (3차) 취업후 12개월 : 300만원 지급
선진국 분류국가	400만원	(1차) 취업후 1개월 : 200만원 지급 (2차) 취업후 6개월 : 100만원 지급 (3차) 취업후 12개월 : 100만원 지급

※ 취업애로청년층은 국가 구분 없이 총 800만원 지급(대상은 [붙임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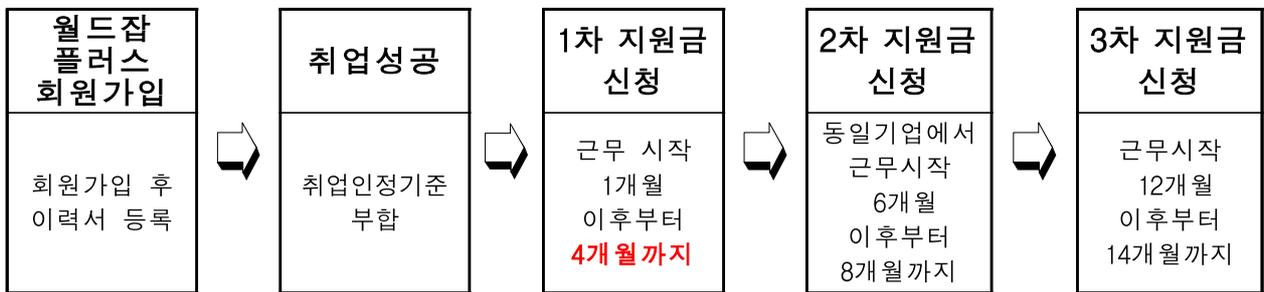
○ 국가구분

- 지원금 우대국가 : 동남아, 중남미, 중동, 유라시아, 아프리카 등 신흥국
 ※ 선진국 분류 25개국을 제외한 국가
- 선진국 분류국가 : 25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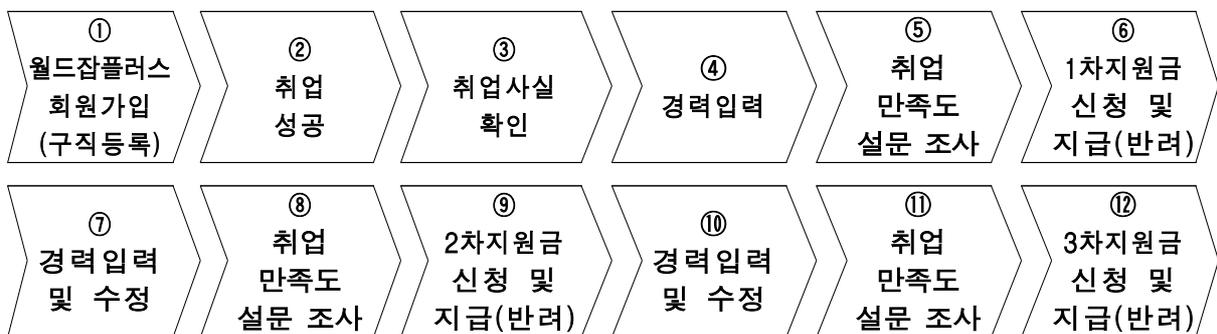
선진국 분류국가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미국,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홍콩

2. 지원절차 * 세부 지원 절차는 [붙임2] 참조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신청 절차 안내】



- * 지원금 신청 전 본인의 구체적인 경력(취업처, 재직기간 및 경력)을 입력
 : 이전 취업처에서의 근무기간이나 직종 등
- * 취업 만족도에 대한 10개 내외 문항의 설문 조사 실시

※ 지원금 신청 전 현지 발급 서류에 대해 영사관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후 제출하거나 취업사실확인 승인 완료하여야 함(2,3차 동일기업 재직 시는 생략)

II 지원 자격 요건

1. 지원대상 : 아래 ①~④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서 취업인정 기준을 만족하는 자

- ① 만 34세 이하('85. 1. 2이후 출생자)인 자
- ② 신청자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의 합산소득이 **6분위** 이하인 자
 - 신청자 중 미혼자의 경우는 본인과 부모의 취업일자 전월 납입한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아래 금액 이하인 자(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미납자는 부과액 기준)
 - 신청자 중 기혼자의 경우는 신청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의 취업일자 전월 납입한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아래 금액 이하인 자(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미납자는 부과액 기준)

※ '20년 사업 공고 후 신청자부터는 6분위 이하 요건 적용('19년 취업자 포함)

<기준 금액>		
취업일자	건강보험료율	보험료 기준 금액*
'20년 1월 까지	6.46%	₩300,130
'20년 2월부터	6.67%	₩309,880

* 보험료 기준 금액은 6분위 월 소득 금액에 건강보험공단 직장 건강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이며, 지역가입자에도 준용
(단, 직장가입자의 경우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실 부담비율이 공시된 보험료율의 1/2인 3.335%('19년도는 3.23%)이므로 부과금액의 2배를 합산

- ③ 월드잡플러스 사전 구직등록(회원가입)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자
 - * 근로계약서 작성 전 입사한 경우는 입사일 기준으로 함
- ④ 아래에 제시된 취업일 이후 해외취업한 자

1차 지원금	2차 지원금	3차 지원금
'19. 7. 21.	'19. 1. 21. (1차 지원금 수령한 경우)	'18. 7. 21. (2차 지원금 수령한 경우)

※ '19년도 취업자의 경우 반드시 본인의 신청 기한 확인 후 신청(7p 참조)

2. 취업인정기준

① 취업비자 : 해당국가에서 합법적으로 근로 가능하며 취업을 목적으로 발급된 비자

※ 취업국가 영주권자 또는 (유사)배우자 비자 소지자는 지원대상에서 배제

- 국가별 취업비자 인정기준 [붙임3] 참조
- 관광, 학업 등 취업활동이 불가능한 비자는 불인정
- 단, 취업비자 발급에 시간이 소요되어 관행적으로 이에 상응하는 출입국 비자가 주어지는 국가의 경우 취업비자로 예외적 인정
예) 중동의 경우, 취업 후 바로 취업비자 발급이 어려워 관행적으로 해당국에 체류 가능한 '멀티비자'가 발급
- 워킹홀리데이비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사업*을 통한 취업자만 인정
* 해외취업알선사업, 해외취업연수사업(K-Move스쿨 등) 등

② 취업직종 : 단순노무직종 제외(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표 준용)

- 근로계약서 및 재직증명서에 취업 직종 미기재 등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작성한 직종 설명서(직무 기술서)를 추가 제출하여 단순노무직이 아님을 증명

제외 직종(단순노무직종)

청소(환경미화)원, 세차원, 주유원, 가정부(가사, 육아도우미), 음식서비스종사자(주방보조, 음식서빙 등), 숙박시설종사자(호텔, 모텔, 오락시설 등에서 청소 및 하우스키핑 등) 등 기타 단순노무종사자로 판단되는 업종

③ 임금수준 : 연봉 1,500만원 이상

- 연봉 환율은 '20.1.2 고시환율 적용
* '19년도 취업자는 '19.1.2 ('19년 사업광고 기준) 환율 적용
- 근로계약서 상 연봉이 기준액 미만이나, 실 수령액이 기준액 이상일 경우는 신청일 기준 반드시 최근 연속된 3개월분의 급여명세서를 제출하여 증명

④ 근로계약기간 : 근로계약이 1년 이상

- 공단사업을 통한 워킹홀리데이비자 취업자 중 한 직장에서 1년 근무가 불가능할 경우(호주, 홍콩 등), 타 업체와 추가 계약하여 총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

⑤ 취업대상 업체 : 다국적기업, 현지로컬기업, 국내기업 해외법인, 한상 등

* 근무지는 외국이어야 하고, 외국계기업으로 근무지가 국내인 경우 제외

3. 지원제외 대상 및 환수조치

○ 제외대상

- 해외취업정착지원금(舊 해외취업성공장려금)을 이미 지원받았거나 (1차 지원금만 지원받은 경우에도 동일) 지방자치단체의 유사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
- 지원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임의로 위변조한 경우
-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심의위원회』에서 지원불가로 판단되는 경우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 원 장 : 국제인력본부장
- 심의위원 : 국제인력본부 내 부장·차장, 외부 유관기관 인사 등(4~7명)
- 심의내용 : 지원대상자 결정 등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등
- 간 사 :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사업 담당자

○ 환수조치

- 상기 제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지원금을 지원하지 않고, 지원된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

III 사업일정 및 신청 방법

신청기한은 월드잡 시스템에 따르며, 모두 한국 시간 기준임을 유의

1. 사업일정

- 사업기간(예정) : 2020.1.2. 09:00부터 ~ **예산소진 시까지**
 - ※ 예산소진 임박 시 마감일 사전 공지 후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마감 기한 내 접수된 신청서는 검토 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함

- 지급일자 : 매월 15일 및 말일 기준으로 신청서 취합·승인 후 다음달(익월) 15일 및 말일 경 지급
 - ※ 예시 : '20.1.2 ~ 1.15 신청 → 2.15 지급/ '20.1.16 ~ 1.31 신청 → 2.29 지급
 - ※ 출입국 기록 추가 확인 등 기타 사유 발생 시 지급일자는 다소 늦어질 수 있음

2. 신청 방법

- 「월드잡플러스 로그인→마이페이지→정착지원금 신청하기」 메뉴에서 제출서류를 이미지 파일(jpg, png 등. pdf는 제외)로 각각 업로드

3. 신청기한

- ① 1차 지원금 : 근로 개시 1개월 이후부터 **4개월** 시점까지
- ② 2차 지원금 : 근로 개시 6개월 이후부터 8개월 시점까지
 - ※ 단, 1차 승인자가 동일업체에서 6개월 간 계속 근로한 경우만 신청 가능
- ③ 3차 지원금 : 근로 개시 12개월 이후부터 14개월 시점까지
 - ※ 단, 2차 승인자가 12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신청 가능
- ④ 1,2차 지원금 수령 후 이직한 경우 3차 지원금 신청
 - 신청기한은 최초 기업 근로 개시 12개월 이후부터 14개월 시점 까지이며 이직 준비 기간은 반영되지 않음
 - 지원 금액은 1,2차 지원금 당시의 최초 취업국가 기준 적용

- 취업인정기준은 1차 지원금 신청기준과 동일
- 1,2차 지원금 수령 당시의 회사에서 근무한 최소 6개월 이상의 경력과 이직한 회사에서의 경력을 합산하여 12개월(재직증명서 기준)이 되어야 함
- ⑤ '19년도 취업자 중 아래에 제시된 취업일 해당자는 '20.2.29까지 신청 하여야 함(제시된 취업일 이후 취업자는 본인 해당 기간 내 신청)
 - '19.7.21~'19.12.31 취업자의 경우 '20.2.29까지 1차 지원금을 신청
 - '19년도 사업에 참여하여 '19년도에 1차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 중 '19.1.21~'19.7.1 취업자의 경우 '20.2.29까지 2차 지원금을 신청 ('19.7.2.이후 취업자는 본인의 2차 지원금 신청기한 내에 신청 가능)
 - '19년도 사업에 참여하여 '19년도에 2차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 중 '18.7.21~'19.1.1 취업자의 경우 '20.2.29까지 3차 지원금을 신청 ('19.1.2.이후 취업자는 본인의 3차 지원금 신청기한 내에 신청 가능)

4. 제출서류

- 제출서류에서 모든 지원 자격 요건 및 취업인정기준이 반드시 확인 가능해야 함
- 서류상 언어가 국영문이 아닌 경우 반드시 원본과 번역본을 함께 제출
- 지원금 신청 전 현지 발급 서류에 대해 영사관 공증(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후 제출하거나 취업사실확인 신청·승인 절차를 완료하여야 함(취업사실 확인 관련은 별도 파일 참조)

※ 단계별 절차 생략 여부는 아래 표와 같음

지원금 신청 단계		취업사실확인 또는 공증 절차
1차		필수
2차		생략
3차	동일기업	생략
	이직(근속6개월 후 이직)	필수

<제출서류>

<p align="center">1차 지원금</p>	<p>(1) 취업비자 (2) 근로계약서 (3) 재직증명서(근속 1개월 이후 발급) (4) 본인통장사본 (5) 가족관계증명서(본인기준 상세본) (6) 개인정보이용 및 취업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서(본인)([서식1] 참조) (7)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동의서(부모/배우자/기타가족용)([서식2] 참조) ※ 취업애로청년층의 경우 증빙 서류 추가 제출 ([붙임1] 참조)</p>
<p align="center">2차 지원금</p>	<p>(1) 취업비자 (2) 재직증명서(근속 6개월 이후 발급)</p>
<p align="center">3차 지원금 (동일기업 근무자)</p>	<p>(1) 취업비자 (2) 재직증명서(근속 12개월 이후 발급)</p>
<p align="center">3차 지원금 (이직한 경우)</p>	<p>(1) 취업비자 (2) 1·2차 지원금 수령 당시 회사의 재직증명서(근속 6개월 이후 발급) (3) 이직한 회사의 근로계약서 (4) 이직한 회사의 재직증명서</p>

제출서류 준비 및 작성 시 유의사항

차수	제출 서류	유의사항
1차 지원금	① 취업 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법적으로 취업을 목적으로 체류 가능한 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취업자(J1 비자 포함)의 경우 여권에 부착된 비자 사본만 인정 가능(2, 3차도 동일) ▶ 태국 취업자의 경우 Work permit과 여권에 부착된 Non-immigration B 비자 함께 제출
	<p><근로계약서와 재직증명서는 취업사실 확인*/영사관 공증/아포스티유 확인을 득한 후 신청></p> <p>* 반드시 월드잡플러스의 취업사실 확인 온라인 승인 이후 지원금 신청</p>	
	② 근로 계약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현황(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등), 근로계약기간, 취업직종, 임금수준, 근로시간, 업무내용, 주요 복리후생(사회보험, 숙소 제공 등), 근로계약 체결일, 사용자·근로자 서명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Offer Letter 등도 가능하며 사업주 서명 필히 기재 ▶ 미국의 경우 DS-7002(TIPP) 서류도 근로계약서 대체 가능 : 단 취업자, 스폰서 기관, 취업처 서명 모두 기재된 완성본에 한함
	③ 재직 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직증명서에는 기업명 및 재직자 성명, 담당업무, 서류 발급일자 및 근무시작일(재직기간), 발급 확인자 서명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 발급일자와 근무시작일은 연월일까지 기재되어야 하며 반드시 근무시작 1개월 이후에 발급된 서류를 제출(1개월 경과 이전에 발급한 서류의 경우 반려됨.)
	④ 통장 사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금 가능한 국내 실물 통장 사본 또는 인터넷 통장 표지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금통장, 해외 은행 통장 등 송금 불가능한 통장 제출 불가 ▶ 불가피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서 확인 가능한 가족 통장 제출 ▶ 인터넷뱅킹 단순 캡처 화면 인정 불가
	⑤ 가족 관계 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드시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님 또는 배우자가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의미하며, 취업 전(前)월 이후에 발급된 서류 제출
⑥ 개인 정보이용 및 취업정보 제공 동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의서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되어 있으며 본인용 1부와 부모/배우자/기타가족용 1부 모두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배우자/기타가족용 개인정보이용동의서에는 부모님 또는 배우자/자녀(배우자나 자녀가 있는 경우)의 자필 서명 또는 날인이 모두 있어야 하며, 부모님의 이혼·사망의 사유로 모두의 서명을 받지 못할 경우 부 또는 모(부양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본)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차수	제출 서류	유의사항
2차 지원금	① 취업 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법적으로 취업을 목적으로 체류 가능한 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취업자(J1 비자 포함)의 경우 여권에 부착된 비자 사본 필히 제출 ▶ 태국 취업자의 경우 Work permit과 여권에 부착된 Non-immigration B 비자 함께 제출 ▶ 일본 취업자의 경우 재류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재류카드(앞면) 제출 ▶ 중국 취업자의 경우 거류증(工作) 추가 제출
	② 재직 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직증명서에는 기업명 및 재직자 성명, 담당업무, 서류 발급일자 및 근무시작일(재직기간),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 발급일자와 근무시작일은 연월일까지 기재되어야 하며 반드시 근무시작 6개월 이후에 발급된 서류를 제출 (6개월 경과 이전에 발급한 서류의 경우 반려됨.)
3차 지원금 (동일 기업 재직)	① 취업 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법적으로 취업을 목적으로 체류 가능한 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취업자(J1 비자 포함)의 경우 여권에 부착된 비자 사본 필히 제출 ▶ 태국 취업자의 경우 Work permit과 여권에 부착된 Non-immigration B 비자 함께 제출 ▶ 일본 취업자의 경우 재류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재류카드(앞면) 제출(*주의: 재류자격인정증명서는 불인정) ▶ 중국 취업자의 경우 거류증(工作) 추가 제출 - 1·2차 지원금 신청 당시 제출한 비자가 만료된 경우 계속 근로를 증명할 수 있는 갱신된 비자를 추가로 제출 (갱신된 비자 제출 시 기존 비자 사본도 함께 제출)
	② 재직 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직증명서에는 기업명 및 재직자 성명, 담당업무, 서류 발급일자 및 근무시작일(재직기간),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 발급일자와 근무시작일은 연월일까지 기재되어야 하며 반드시 근무시작 12개월 이후에 발급된 서류를 제출 (12개월 경과 이전에 발급한 서류의 경우 반려됨.)

차수	제출 서류	유의사항
3차 지원금 (이직)	① 취업 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법적으로 취업을 목적으로 체류가능한 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취업자(J1 비자 포함)의 경우 여권에 부착된 비자 사본 필히 제출 ▶ 태국 취업자의 경우 Work permit과 여권에 부착된 Non-immigration B 비자 함께 제출 ▶ 일본 취업자의 경우 재류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재류카드(앞면) 제출 ▶ 중국 취업자의 경우 거류증(工作) 추가 제출 - 1·2차 지원금 신청 당시 제출한 비자가 만료된 경우 계속 근로를 증명할 수 있는 갱신된 비자를 추가로 제출(갱신된 비자 제출 시 기존 비자 사본도 함께 제출)
	② 재직 증명서 (이직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차 지원금 신청 전 재직했던 회사의 재직증명서에는 기업명 및 재직자 성명, 담당업무, 서류 발급일자 및 근무시작일(재직기간),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등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 반드시 6개월 이상의 경력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 발급일자와 근무시작일은 연월일까지 기재되어야 하며 반드시 최초 근무시작 6개월 이후에 발급된 서류를 제출(6개월 경과 이전에 발급한 서류의 경우 반려됨.)
	③ 근로 계약서 (이직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직한 회사에서의 근로계약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 기업현황(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등), 근로계약기간, 취업직종, 임금수준, 근로시간, 업무내용, 주요 복리후생(사회보험, 숙식 제공 등), 근로계약 체결일, 사용자·근로자 서명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Offer Letter 등도 가능하며 사업주 서명 필히 기재 ▶ 미국의 경우 DS-7002(TIPP) 서류도 근로계약서 대체서류로 가능 : 단 취업자, 스폰서 기관, 취업처 서명 모두 기재된 완성본에 한함
	④ 재직 증명서 (이직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직한 회사의 재직증명서에도 기업명 및 재직자 성명, 담당업무, 서류 발급일자 및 근무시작일(재직기간),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등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 ②와 합산하여 반드시 12개월 이상의 경력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 발급일자와 근무시작일은 연월일까지 기재되어야 함
<p><이직 후 3차 지원금 신청 시에는 이직 후 직장에서의 근로계약서 및 재직증명서 모두에 대해 취업사실 확인/영사관 공증/아포스티유 확인을 득하여야 함></p>		

IV 기타 유의사항

- (접수순 지급) 접수된 지원금 신청서는 검토 후 접수순으로 지급하며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소진 시 즉시 마감함
- (온라인 접수) 지원금 신청 및 서류 제출 등 제반 절차는 홈페이지 월드잡플러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 로그인→ 마이페이지→ 정착지원금 신청하기」 메뉴
- (기타 사항) 지원금 신청서(증빙서류 포함)를 정해진 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제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지원금 취소 및 환수

▲ 서류마감기한이 남았더라도 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

- 1차 지원금 신청 : 근무시작 1개월 이후부터 **4개월** 시점까지
- 2차 지원금 신청 : 근무시작 6개월 이후부터 8개월 시점까지
- 3차 지원금 신청 : 근무시작 12개월 이후부터 14개월 시점까지

※ 월드잡플러스 내 연락처(휴대전화번호, 이메일 등) 기재착오 또는 변경 등으로 인해 연락이 불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본인 책임

붙임 1

취업애로청년층 지원대상 및 확인서류

지원대상자	확인(제출)서류	발급기관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본인명의로 발급)	주민센터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서	주민센터
③ 차차 상위계층 가구 구성원 * 가구단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60% 이하	·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 신청인 가구구성원들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용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부모, 배우자 및 기타가족 용 개인정보이용동의서에 함께 기재 가능) ·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④ 국가 유공자 가구 구성원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본인명의로 발급)	지방보훈청
⑤ 장애인복지법으로 적용받는 장애인	· 장애인복지카드	주민센터
⑥ 여성가장 * 배우자가 없는(사별 또는 이혼) 여성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자 또는 미혼 여성으로서 동거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자	·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 동거 가족의 근로능력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장애인등록증, 진단서 등)	주민센터 해당기관
⑦ 다문화가족 자녀 *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정한 다문화가족의 자녀	·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 기본증명서(한국 국적취득사실 기재)	주민센터

<참고> 차차 상위계층 가구단위별 소득 인정액(기준 중위소득 60%)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2020년 기준 중위소득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기준 중위소득 60%	1,054,316	1,795,188	2,322,346	2,849,504	3,376,662	3,903,820	4,433,829
건강보험료	70,323	119,739	154,900	190,062	225,223	260,385	295,736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83,347원씩 증가(8인 가구: 8,273,062원)

* 관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3호 "2020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지원절차】

절 차	주 체	일 정	수행 내용
① 회원가입 및 구직등록	구직자	연 중	○ 월드잡플러스 (www.worldjob.or.kr) ☞ 기존회원 가입 불필요
↓			
② 취업성공	구직자	연 중	○ 취업 증빙 서류 확보 및 1차 지원금 신청 준비
↓			
③ 1차 지원금 신청 (증빙서류 제출)	구직자	* 근로개시 1개월 이후부터 3개월 간 신청 가능	○ 업체에서 1개월 근무 ○ 비자사본 등 제출서류 월드잡플러스 업로드
↓			
④ 1차 지원금 지급 또는 반려	공 단	* 월 15일 및 말일 기준으로 승인 후 익월 입금	○ 증빙서류 검토 후 지원금 지급 또는 지원요건 미충족 시 반려 ☞ '20년 지원은 예산범위 내 접수순 마감
↓			
⑤ 2차 지원금 신청 (증빙서류 제출)	구직자	* 근로개시 6개월 이후부터 2개월 간 신청	○ 동일업체에서 6개월 근무 ○ 비자사본 등 제출서류 월드잡플러스 업로드
↓			
⑥ 2차 지원금 지급 또는 반려	공 단	* 월 15일 및 말일 기준으로 승인 후 익월 입금	○ 증빙서류 검토 후 지원금 지급 또는 지원요건 미충족 시 반려 ☞ '20년 지원은 예산범위 내 접수순 마감
↓			
⑦ 3차 지원금 신청 (증빙서류 제출)	구직자	* 근로개시 12개월 이후부터 2개월 간 신청	○ 최초 취업일 후 12개월 근무 ○ 비자사본 등 제출서류 월드잡플러스 업로드
↓			
⑧ 3차 지원금 지급 또는 반려	공 단	* 월 15일 및 말일 기준으로 승인 후 익월 입금	○ 증빙서류 검토 후 지원금 지급 또는 지원요건 미충족 시 반려 ☞ '20년 지원은 예산범위 내 접수순 마감

붙임 3**취업비자 인정기준**

순번	국가	취업비자 인정기준
1	일본	- 취업비자 : 기술·인문지식·국제사무, 기능
2	캐나다	- 취업비자 : Work Permit, 한-캐FTA - 인턴비자 : Post-graduation Work Permit
3	호주	- 취업비자 : 482고용비자, 407비자 등
4	싱가포르	- 취업비자 : EP(전문인력비자), S pass, WP(work permit)
5	중국	- 취업비자 : Z비자, (홍콩 : EMPLOYMENT비자)
6	미국	- 취업비자 : H-1B, H-1C, H-2B 등 - 인턴비자 : OPT, J-1
7	뉴질랜드	- 취업비자 : Work Visa
8	필리핀	- 취업비자 : 9G비자, 47(a)(2)비자, AEP, Clark Visa
9	인도네시아	- 취업비자 : 312, D-10
10	베트남	- 취업비자 : LD (거주증 앞뒷면 모두 제출)
11	말레이시아	- 취업비자 : Employment Pass
12	아랍에미리트	- 취업비자 : Residence Visa
13	독일	- 취업비자 : Residence For Employment, EU Blue Card

※ 상기 국가 외 취업국가는 1년 이상의 근로가 가능한 해당국 취업비자 인정

[서식 1] ※ 모든 항목 작성 및 서명 필요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본인용)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지원 대상 자격확인을 위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본인의 출입국 기록 및 건강보험자격사항 및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정보를 관할기관에 조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조회할 정보 및 목적

조회정보	목적	동의 효력기간
출입국 기록	해외근무 사실 확인	취업일로부터 2년간
건강보험자격, 건강보험료 납부액	소득분위 확인	

2020. . .

주민등록번호:

이 름 : (서명)

취업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서(본인용)

본인은 정부의 해외취업지원사업(K-Move스쿨, 민간해외취업알선지원사업, 멘토링사업, 해외취업정착지원금사업 등) 참여자의 사후관리지원 및 해외취업의 효과 분석을 통한 향후 정책방향 수립 등을 위하여 취업정보 등에 관한 정보 요구시 성실히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공 정보 및 목적

제공정보	목적
취업처, 이직/퇴직 여부, 임금상승 여부, 국내 복귀·취업여부 등	참여자의 사후관리 지원 및 해외취업의 효과 분석을 통한 향후 정책방향 수립에 반영

제공 동의 효력기간 : 취업일로부터 2년간

2020. . .

취업자 : (서명)

[서식 2]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부모/배우자/기타가족용)

본인은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신청자 _____ 의 지원금 지원 대상 자격확인을 위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본인의 건강보험자격사항 및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정보를 관할 기관에 조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조회할 정보 : 해당자의 건강보험자격사항 및 건강보험료 납부액
- 조회 목적 : 소득분위 확인
- 조회동의 효력기간 : 2020년 말까지

성 명	신청자와의 관계 (부/모/배우자 등)	주민등록번호	서 명

2020. . .